

정기(기동점검) 점검 결과보고

[난지물재생센터 3차(총인)처리시설 설치사업(장기-1차)]

□ 점검일시 : 2021.12.02 (목)

□ 점검결과

◆ 점검자 : 이상현

○ 추락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내부 집수정 양수기 접근시설은 일부 안전난간이 1단만 설치되어 있고 주변 토사 유실로 위험요소가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람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(추락의 방지)



○ 가설통로 안전(방재시설부)

- 현장 주통로에 배수구가 있어 통행시 넘어 다녀야함에 발판 등으로 통로를 설치하기 바람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(통로의 설치)



○ 전도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사면 상부 작업자가 난간 바깥쪽에서 단부를 등지고 작업할 경우 장비가 작업중인 하부로 전도 우려가 있으므로 작업방법 개선하기 바람
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(전도의 방지)



○ 사면 안전(방재시설부)

- 토공작업로 측면부는 세굴현상이 보임에 유지 관리 측구 설치 필요
- 시트파일 시공부 단부 높이가 사면구배 1:1.5에 적합하도록 시공 관리하기 바람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(붕괴,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)



○ 흙막이가시설 안전(방재시설부)

- 시트파일 이음부에서 일부 누수가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람
- ※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50조(붕괴, 낙하에 의한 위험 방지)



○ 건설기계 안전(방재시설부)

- 천공 작업시 장비 하부에 철판을 설치하였으나 일부 미설치된 부분이 있으므로 조치하기 바람
- 크레인 작업구간은 신호수 배치 또는 주변 통제 안전시설 설치하여 관리하기 바람
- 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2.2 건설기계 안전-001(건설기계), 011(항타 및 항발기)





○ 화재/폭발/질식 재해 예방(방재시설부)

- 위험물 보관소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조치바람

- ① PP로프 사용금지
- ② 보관소에서 가스호스 연결하여 사용 금지 (필요량 대차활용)
- ③ 주변 소화기 비치
- ④ 산소, LPG 분리보관
- ⑤ MSDS 게시

- 시트파일 용접과 관련 주변에 소화기를 비치하고 작업하기 바람

- 현장의 소화기는 월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착 관리하기 바람

※ 건설공사장 안전관리지침 3.1.6 화재재해예방-004(소화기), 009(위험물보관소)

